

**특정감사**

# **감 사 보 고 서**

**-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

**2016. 7.**

**감 사 원**

# 감사원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공무국외여행자의 근무 테반 등과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

조 치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

### 내 용

####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은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정<sup>1)</sup>에 따라 소속 전·현직 공무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sup>2)</sup> 동안 광역 17개 및 기초 22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실시한 공무국외여행 자료를 제출받아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과 대조·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21개 기관의 63명이 국외여행기록이 없거나 여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sup>3)</sup>으로 확인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국외여행자가 당초 허가받은 대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가기간과 다르게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

1)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예비조사기간 2016. 3. 2.~3. 11., 실지감사기간 2016. 3. 21.~4. 18.

3) 여행기간 불부합은 2016년 4월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지역 8곳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구리시, 양주시, 진천군, 익산시, 김해시, 거창군과 기관장이 재판 중인 지방자치단체 5곳인 대전광역시 본청, 경상남도 본청, 포천시, 하남시, 괴산군 등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함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공무국외여행자의 근무 터만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의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자는 공무국외여행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대로 공무국외여행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 보고하여 그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지급받은 여행경비는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기간보다 일찍 귀국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 보고하고 근무지에 복귀하여야 하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무 등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광명시 ▶과 L은 2014. 10. 15.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부친과 하와이로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10. 1. 부친의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1인당 2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부친의 개인사정으로 동행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며 부친에 대한 여행

경비 250만 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의 공무국외여행자 63명은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자의 근무 태만 유형 및 여비 반납 등 명세”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후 여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기간보다 일찍 귀국한 후 아무런 보고나 결재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등 당초 허가받은 대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 3.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별표 3] 기재 8개 기관(민간인 적용 여부 “○”로 표시된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시·군·구의 예산으로 출장하는 민간인의 경우에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3] 기재 13개 기관(항공권 등 증빙자료 제출 여부 “○”로 표시된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할 때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할 때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대로 수행하였는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13개 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허가받은 대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적용범위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이므로 예산을 허가받은 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계획대로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sup>

그런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의 공무국외여행자 63명은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자의 근무 태만 유형 및 여비 반납 등 명세” 및 [별표 2] “공무국외여행 허가자 주요 근무태만 사례와 사후관리 소홀 명세”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거나 허가받은 기간보다 일찍 귀국한 후 아무런 보고나 결재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등 당초 허가받은 대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별표 3]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민간인 적용 및 항공권 등 증빙자료 제출 포함 여부 명세”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14개 기관(민간인 적용 여부나 항공권 등 증빙자료 제출 여부에 “×”로 표시된 기관, 청주시 제외)은 관련 공무국외여행 규정 미비로 공무국외여행자가 제대로 공무국외여행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광명시 등 6개(광명시, 양주시, 여주시, 고창군, 순천시, 의령군) 기관과 청주시<sup>5)</sup>는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계획대로 여행을 다녀왔는지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조

4)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규칙의 적용범위로 공무원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시 첨부자료로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5) 청주시의 경우 공무원이 배낭연수를 불참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공무원에 대한 항공권 등의 증빙을 제출받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며, 민간인국외여행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14개 기관에서 제외함.

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 ① 이 건 공무국외여행 연수자들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허가받은 대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거나 여비를 반납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인솔자들은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여비를 반납 받지 못하는 등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 ②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및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민간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현지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서울 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3] 기재 13개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공무국외 배낭여행을 허가받은 대로 실시하지 않고 조기 귀국 후 별도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한 M, N, O, P, Q 등 5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통보)을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평택시장은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간 중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여행을 하며 무단결근한 R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순천시장은 공무국외여행 불참 후 무단결근한 S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3] 기재 13개 기관<sup>6)</sup>의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 허가받은 대로 공무국외여행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민간인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계획대로 현지 일정을 진행하였다는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별표 1] 기재 21개 기관의 장은

① 앞으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실제 여행을 다녀왔다는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공무국외여행 미실시 후 여비를 반납하지 않는 일 등이 없도록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안산시, 안양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원주군, 성주군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자 근무 태만 유형 및 여비 반납 등 명세

순번	단체명	인원	근무 태만 유형 구분					감사 이후 여비 반납 및 정산
			여행 미실시	허가자 의의 자와 여행	동행자 여행 미실시	허가국 외 및 국내여행	조기 귀국	
1	서울 성동구	2	○	-	-	-	-	○
2	대구광역시 달서구	14	-	-	-	-	○	해당 없음
3	광주광역시 남구	1	-	○	-	-	-	○
4	광주광역시 동구	1	○	-	-	-	-	○
5	광주광역시 북구	5	-	-	○	○	-	○
6	광명시	3	○	○	-	-	-	○
7	안산시	6	-	○	○	-	○	○
8	안양시	2	○	-	-	-	-	○
9	양주시	1	-	-	-	-	○	해당 없음
10	여주시	1	-	-	○	-	-	○
11	이천시	1	-	-	○	-	-	○
12	평택시	4	○	-	-	○	○	○
13	포천시	6	○	○	-	○	○	해당 없음
14	하남시	2	○	-	-	-	-	○
15	청주시	1	○	-	-	-	-	○
16	고창군	2	○	-	-	-	-	○
17	완주군	1	○	-	-	-	-	○
18	곡성군	1	-	-	-	-	○	○
19	순천시	1	○	-	-	-	-	○
20	성주군	7	○	-	○	-	○	○
21	의령군	1	○	-	-	-	-	○
합계		63						

자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21개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공무국외여행 허가자 주요 근무태만 사례와 사후관리 소홀 명세

연번	시도	지방자치단체 (종류)	근무 태만 등과 사후관리 소홀 내용
1	경기	광명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 L은 2014. 10. 15.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부친과 하와이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4. 10. 1. 부친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1인당 2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부친의 개인 사정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오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li> <li>이와 관련하여 광명시는 L에게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받았으나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아 가족이 아닌 사람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li> </ul>
2	대구	달서구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과 M, 위 관서 ♥국 ♣과 N, ♦동 O, ♥동 P, ♦실 Q 등 5명은 2015. 4. 1. "스페인의 문화정책 및 관광지역의 교통정책"이라는 공무국외 배낭연수(기간: 2015. 4. 17. ~4. 28.)를 다녀오도록 허가(1인당 300만 원 지원)받음</li> <li>-M, N, O, P, Q 등 5명은 2015. 4. 1.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해 4. 10.경 허가일정과 같은 날 출국하여 이를 먼저 귀국하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고는 2015. 4. 17.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허가기간 이를 전인 같은 해 4. 26. 귀국하였으며, M 등 5명은 모두 조기 귀국하였다는 보고를 하지 않고 연가 등을 신청하지도 않은 채 남은 허가기간[4. 27.(월)~4. 28.(화)] 무단결근하였는데도</li> <li>-대구광역시 달서구는 현지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등의 증빙을 제출받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li> </ul>
3	경기	안산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 T는 2015. 3. 20.부터 같은 해 3. 29.까지 배우자와 호주 및 뉴질랜드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같은 해 3. 2. 배우자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700만 원(1인당 35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가족 사정으로 배우자는 출국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배우자의 여행경비는 반납하지 않음</li> <li>★과 U는 2015. 5. 10.부터 같은 해 5. 18.까지 각각 배우자와 팔라우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5. 4. 30.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각각 4,374천여 원과 4,390천여 원을 지급받음</li> <li>-U는 배우자의 개인 사정으로 친인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허가받은 일정보다 3일 이른 2015. 5. 15. 귀국하고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별도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휴일[5. 16.(토)~5. 17.(일)]을 제외한 하루[5. 18.(월)]를 무단으로 결근</li> <li>이와 관련하여 안산시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만 제출받고 실제 여행을 허가받은 대로 다녀왔는지에 대한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li> </ul>
4	충북	청주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주시는 2014. 3. 4. ◎과 V 등 5명에게 1인당 110만 원을 지원하여 2014. 4. 1.부터 같은 해 4. 4.까지 일본으로 해외 배낭연수를 다녀오도록 허가하였으나 위 연수자 중 V는 배낭연수에 불참하였고 이에 대한 여비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li> <li>-위 관서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여행을 다녀왔는지에 대한 항공권 등 증빙자료도 제출받지 않아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li> </ul>

연번	시도	지방자치단체 (종류)	근무 태만 등과 사후관리 소홀 내용
5	경기	평택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소 ◎과 R은 2014. 11. 20.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배우자와 대만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2014. 11. 7. 이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1. 10. 배우자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600만 원(1인당 300만 원)을 지급받음</li> <li>- 그런데 R은 배우자의 사정으로 자녀와 같이 가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4. 11. 10. 총 8일의 여행기간 중 4일만 대만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머지 4일은 가족과 함께 국내여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변경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4일을 무단 결근함</li> <li>-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민간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계획대로 현지 일정을 진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지 않았으며 장기 근속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여 R과 자녀가 허가받은 대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li> </ul>
6	전남	순천시 (주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S는 2014. 3. 13. “시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간: 2014. 3. 26.~3. 29.)를 받았으나 연수 첫날인 2014. 3. 26. 김해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런 통증으로 연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날 19시경 병원 진료 후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다음 날인 3. 27. 병원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여 자택으로 귀가한 후 3. 28.(금)까지 집에서 쉬면서 허가권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고 병가처리도 하지 않음으로써 연수기간 중 3. 29.(토)을 제외한 3일[3. 26.(수)~3. 28(금)]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무단결근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사후에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여행경비도 반납하지 않음</li> <li>- 또한 ◎과장 W는 S의 소속 과장 및 위 연수의 총괄책임자로서 2014. 3. 31.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출근하여 S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S에게 사후에라도 병가 등에 대한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2014. 4. 4. 경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내용을 정리하고자 S를 제외한 10여 명의 연수단원이 모인 자리에서 S가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W는 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가지고 2014. 4. 10. 시장에게 보고한 후 최종 결재를 받음</li> <li>-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는 계획대로 현지일정을 진행하였다는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현장 사진과 여행자보험 영수증 정도만 확인한 후 여행자 전원이 현지에 다녀온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li> </ul>

자료: 경기도 광명시 등 6개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3]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민간인 적용 및 항공권 등 증빙자료 제출 포함 여부 명세

연번	시·도	시·군·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민간인 적용 여부	항공권 등 증빙자료 제출 여부
1	서울	성동구	×	○
2	대구	달서구	○	×
3	광주	남구	×	×
4		동구	×	○
5		북구	×	×
6	경기	광명시	○	○
7		안산시	×	○
8		안양시	×	○
9		양주시	○	○
10		여주시	○	○
11		이천시	×	○
12		평택시	×	× (2016년 신설)
13		포천시	×	×
14		하남시	×	○
15	충북	청주시	× (2016년 신설)	○
16	전북	고창군	○	○
17		완주군	×	× (2016년 신설)
18	전남	곡성군	× (2016년 신설)	× (2016년 신설)
19		순천시	○	○
20	경북	성주군	○	×
21	경남	의령군	○	○

자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21개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감사원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관 영천시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

조 치 기 관 영천시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

### 내 용

영천시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인, 이장·통장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역 견학, 벤치마킹, 자료수집 등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지방자치단체 훈령, 규칙)에 따라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허가 등을 하고 있다.

#### 1.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운영기준 제6조 제2항과 [별표 12] 및 집행기준 III-8-2.와 III-8-4.의 규정에 따르면 편성목인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예산항목이므로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의 하위 통계목인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에 국외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sup>1)</sup>은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여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선진지역 견학, 벤치마킹, 자료수집 등을 명목으로 농업인, 이장·통장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에 한정하여 행사 참석, 산업 시찰·견학을 위한 여비 등을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민간인의 국외여비를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3. 21.~4. 18.) 중 [별표 1] 기재 17개 기관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실태(2014~2015년)를 점검한 결과, 남해군은 2014. 11. 24.부터 11. 28.까지 농업경영인회 소속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농산물시장 방문, 주변 명승지 탐방 등 관광 일정이 포함된 단순 견학 위주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으로 2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영천시는 2014. 8. 10.부터 8. 14.까지 선진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을 시찰한다는 목적으로 관내 읍·면·동 체육회장 12명<sup>2)</sup>을 대상으로 중국 연변과 용정 일대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백두산·모아산 국립공원을 등반하는 일정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으로 17,000,000원을 지원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행정자치부 의견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일반보상금’의 하위 통계목으로 민간인의 국외 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는 집행할 수 없음

2) 계획서 상 27명의 여행대상자(인솔공무원 1명 포함) 중 17명의 민간인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1인당 1,000,000 원)하였는데 실제로는 12명만 여행을 다녀옴(나머지 5명은 여비 수령 후 미반납)

또한 남양주시는 2015. 4. 11.부터 4. 16.까지 관내 이장·통장 49명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자궁심 제고를 명목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등 관광 위주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58,800,000원을 지원하는 등 17개 기관은 [별표 1]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명세(2014~2015년)<sup>3)</sup>”와 같이 운영기준과 집행기준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영천시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인에게 총 974,776천 원의 국외여행경비를 선심성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였다.

## 2.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절차 미이행 및 여행보고서 미제출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및 영천시 등 [별표 2] 기재 11개 기관의 「공무국외여행규정」(영천시 훈령) 등<sup>4)</sup> 제2조, 제3조, 제9조와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이 지원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과 동일하게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허가를 거쳐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영천시 등 [별표 2] 기재 11개 기관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내역(2014~2015년)과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확인한 결과, 영천시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

3) 이번 감사기간 중 점검한 [별표 1]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명세”를 포함하여 영천시 등 17개 기관은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예산 항목으로 44억여 원(민간인 3,850명)을 집행함

4)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훈령 또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남해군은 심사·허가를 거쳤으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으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남양주시 등 [별표 2] 기재 4개 기관은 「공무국외여행규정」(남양주시 규칙 등)에 예산이 지원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심사·허가를 받을 것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등 상위 규정인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에 부합되지 않게 자체 규정을 운용하면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허가를 거치지 않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도 제출받지 않는 등 [별표 2]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리 현황(2014~2015년)”과 같이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상위 규정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영천시 등 [별표 2] 기재 15개 기관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 나. 민간인 국외여비 산정업무 등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2항과 제16조 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외여행자의 경우 위 규정의 [별표 3], [별표 4]에 따라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여행사의 견적을 기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주시의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업무 담당자 AD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인당 여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여행사가 제시한 1인당 연수경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2014. 10. 16. 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안하는 등 상주시의 업무 관련자 4명은 1인당 연수경비를 2,500,000원으로 과다하게 산출<sup>5)</sup>한 후 상주시 지원 60%, 자부담 40%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해 11. 28. 자부담 1,010,000원을 제외한 1,490,000원을 농업인 24명(1팀)에게 각각 국외여비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2014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적정 국외여비보다 22,116,400원을 과다하게 지원되었다.

[표]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대한 여비 초과 지급 명세

(단위: 원)

구 분	① 여행사 견적 기준 1인당 지원액	②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1인당 지원액	③ 1인당 초과 지급액	④ 초과 지급액 합계
1팀 (24명)	$2,500,000^{\text{1)}} \times 60\%^{\text{2)}} = 1,490,000$	$1,449,890^{\text{3)}} \times 60\% = 869,930$	①-②=620,070	③×24=14,881,680
2팀 (16명)	$2,500,000 \times 60\% = 1,490,000$	$1,729,720^{\text{4)}} \times 60\% = 1,037,830$	①-②=452,170	③×16=7,234,720
계 (40명)				22,116,400

주: 1. 여행사 견적에 따른 1인당 연수경비(5박 6일 및 6박 7일, 일본 기준)

2. 예산 지원 비율(자부담 40%)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1인당 여비(5박 6일, 일본 기준)

4.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1인당 여비(6박 7일, 일본 기준)

자료: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5) 여행 1팀의 경우 24명의 농업인이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 일원을 연수하는 것인데 통역비를 5,400,000원 (225,000원×24명)으로, 행사비(차량, 식사, 입장료)를 24,414,240원(1,017,260원×24명)으로 산출하는 등 1인당 여행경비를 미리 2,500,000원으로 정해놓고 세부 항목의 금액을 끼워 맞춘 결과 농업인 1인당 실제 자부담액은 310,000원에 불과함

## 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미환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국외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민간인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당초 계획된 공무국외여행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원한 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2014~2015년) 관련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영천시 등 10개 기관은 [별표 3]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미환수 사례”와 같이 42명의 민간인이 공무국외여행에 불참하였는데도 여비 22,621,630원을 환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천시 “2014년 읍면동 체육회장 해외연수” 업무 담당 계장 AE는 사전에 민간인의 불참 사실을 알고도 업무 담당자 AF가 공무국외여행 불참자 5명으로부터 여비 5,000,000원 환수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등 영천시, 창원시, 김해시 등 3개 기관의 총 4명은 민간인의 공무국외여행 불참 사실을 알면서도 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관련

이 건 영천시 등 [별표 1] 기재 15개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운영기준과 집행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거창군과 밀양시는 관광 일정이 포함되었지만 단순 선심성 국외여행이 아닌 사업

수행 목적에 부합됨을 주장하고 있으며, 거창군, 경주시, 해남군 등 3개 기관은 집행기준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에 지역주민 대표를 전문가의 예로 들고 있어서 이장·통장과 농업인도 지역주민 대표로서 전문가로 볼 여지가 있고, 행사 참석,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여비 등은 ‘행사설비보상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국내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국외 행사 참석, 산업시찰 등을 위한 국외여비도 지원할 여지가 있으므로 운영기준과 집행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영기준과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민간인에게 국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 자체가 선심성을 의미하므로 거창군과 밀양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②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이 건 영천시 등 [별표 2] 기재 15개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심사·허가 단계부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절차 준수는 물론이고 선심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주시는 여행사 견적을 기준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여비를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를 산정할 것이고 민간인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을 제출받을 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당초 계획과 다른 민간인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천시 등 [별표 3] 기재 10개 기관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로부터 여비를 미환수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도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 항공권 등 국외여행 사실의 증빙서류를 첨부도록 하며 사업담당자 등에게 업무 연찬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의 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취지와 다르게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영천시장 등 [별표 2] 기재 11개 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수행할 때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인도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절차를 거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남양주시장 등 [별표 2] 기재 4개 기관의 장은 예산이 지원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국외여행 심사·허가 절차를 거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부합되게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산정할 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산정과 달리 여행사의 견적 등을 기준으로 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영천시장 등 [별표 3] 기재 10개 기관의 장은 앞으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게 지원한 여비가 미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영천시장, 창원시장, 김해시장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 사실을 알고도 지원한 여비를 환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명세(2014~2015년)

(단위: 천원, 명)

기관명	사업명	예산과목	지원금액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인원 <sup>(주)</sup>
김해시	2014년 수출농가 해외시장 조사	민간인 국외여비	6,118	일본	3박 4일	10
	2015년 수출농가 유럽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9,450	네덜란드 등	6박 8일	9
	2015년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필리핀 등	6박 7일	18
구리시	2014년 민주평통 안보현장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23,409	중국	4박 5일	20
	2014년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3,998	베트남	3박 5일	27
	2015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3,995	일본	4박 5일	29
진천군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8,826	중국	4박 5일	29
	2015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9,393	네덜란드	5박 7일	17
거창군	2014년 농민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3,000	라오스	4박 5일	23
	2015년 농민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3,000	일본	4박 5일	23
괴산군	2014년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4,000	일본	4박 5일	21
	2015년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0,790	일본	4박 5일	22
남양주시	2014년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60,000	홍콩 등	3박 4일	50
	2015년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8,800	캄보디아	4박 6일	49
	2014년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30,000	일본	4박 5일	25
	2015년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5,000	일본	3박 4일	15
	2014년 그린농업대학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56,845	중국	3박 4일	78
	2015년 그린농업대학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9,451	일본	3박 4일	54
	2014년 주민자치위원회 국외연수	행사실비보상금	14,080	필리핀	4박 5일	44
	2015년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행사실비보상금	15,000	대만	3박 4일	30
남해군	2014년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중국	4박 5일	21
상주시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1팀)	민간인 국외여비	35,760	일본	5박 6일	24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2팀)	민간인 국외여비	23,840	일본	6박 7일	16
	2015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1팀)	민간인 국외여비	26,400	싱가포르 등	3박 5일	20
영천시	2014년 읍·면·동 체육회장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7,000	중국	4박 5일	12
	2014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2,600	필리핀	4박 5일	20
	2015년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2,600	일본	4박 5일	20
	2015년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3,860	홍콩 등	4박 5일	7
밀양시	2014년 농업경영인회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1,800	뉴질랜드 등	6박 8일	21
창원시	2015년 수산경영인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8,000	일본	5박 6일	34
경주시	2014년 이장 산업시찰(현곡면)	행사실비보상금	6,400	일본	1박 2일	28
	2014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양남면)	행사실비보상금	3,960	중국	4박 5일	17
	2014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양북면)	행사실비보상금	4,000	중국	5박 6일	17
	2015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안강읍)	행사실비보상금	5,000	베트남 등	5박 4일	21
	2015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외동읍)	행사실비보상금	5,580	라오스	5박 6일	25
	2015년 통장 산업시찰(월성동)	행사실비보상금	5,200	중국	4박 5일	23
	2015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7,000	태국	4박 5일	25
영덕군	2014년 생활개선회 농업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2,450	중국	3박 4일	13
	2014년 이장단 선진행정 비교연수	행사실비보상금	31,500	중국	4박 5일	31
청도군	2014년 농업경영인 국외농업 비교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0,500	태국	3박 5일	15
	2014년 농업경영인 국외농업 비교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0,500	필리핀	4박 5일	15
해남군	2015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5,500	독일 등	7박 9일	16
영동군	2014년 임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2,904	중국	4박 5일	15
정선군	2015년 이장 선진지 국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7,267	태국	3박 5일	33
	2015년 음식문화 교류방문	행사실비보상금	4,072	일본	3박 4일	8
17개 기관	계		974,776			1,090
공통 확인사항	○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가 아닌 농업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단순 견학 위주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실시 ○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비로 지급					

주: 실제 민간인 여행인원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리 현황(2014~2015년)

구 분	기관명	심사·허가 여부	여행보고서 제출 여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및 여행보고서 제출 규정이 있는 기관 (11개 기관)	김해시	×	×
	구리시	×	×
	진천군	×	×
	남해군	○	×
	상주시	○	×
	영천시	×	×
	창원시	○	×
	경주시	×	×
	영덕군	×	×
	청도군	×	×
	영동군	×	×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및 여행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는 기관 (4개 기관)	괴산군	×	×
	남양주시	×	×
	해남군	×	×
	정선군	×	×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미환수 사례(2014~2015년)

(단위: 명, 원)

기관명	불참자수	미환수액 <sup>(주)</sup>	미환수 사례
김해시	1	1,111,110	○ 2015. 6. 22.~6. 28. '농업인 해외연수(필리핀 등)'를 실시하면서 사업담당 AG가 인솔하여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행에 참가한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고 지원한 여비도 미환수
남해군	4	3,200,000	○ 2014. 11. 24.~11. 28. '농업인 해외연수(중국)'을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도 없었고 농업인들이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업담당자 AH는 불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영천시	5	5,000,000	○ 2014. 8. 10.~8. 14. '읍면동 체육회장 해외연수(중국)'를 실시하면서 사업담당 계장 AI 등은 사전에 민간인 3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솔공무원 AJ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 따르면 2명이 추가로 불참하여 총 5명이 불참하였는데도 여비를 미환수
	1	600,000	○ 2015. 11. 26.~11.30.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일본)'를 실시하면서 여행 당일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담당이자 인솔공무원인 AK는 여비를 미환수
밀양시	1	1,900,000	○ 2014. 8. 25.~9. 1.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호주 등)'를 실시하면서 여행 당일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비를 미환수
창원시	1	800,000	○ 2015. 5. 27.~6. 1. '수산업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일본)'을 실시하면서 사업담당 AL이 인솔하여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행에 참가한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고 지원한 여비도 미환수
경주시	24	4,600,000	○ 2014~2015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등 총 6건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도 없었고, 이장들이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업담당자들이 불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읍·면·동 개별적으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항
영덕군	2	1,660,000	○ 2014. 6. 10.~6. 13. '생활개선회 농업해외연수(중국)'를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도 없었고 농업인들이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업담당자 AM은 불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해남군	1	1,500,000	○ 2015. 4. 3.~4. 11.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도 없었고 여행대상자들이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업담당자 AN은 불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영동군	1	860,300	○ 2014. 8. 20.~8. 24. '임업인 해외연수(중국)'를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 AO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여비를 미환수
정선군	1	1,390,220	○ 2015. 12. 1.~12. 5. '이장 선진지 국외연수(태국)'를 실시하면서 사업담당자 AP는 사전에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원한 여비 환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음
10개기관 계	42	22,621,630	

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전액 환수 완료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